

주요심결사례

2001. 11.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의약품도매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1유거2292)	의약품도매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001. 7. 18일자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에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줄릭은 국내 의약산업 왜곡”이라는 표제하에 ‘국내 의약품 유통업과 제약산업의 씨를 밀리려는 더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한독약품 김영진 사장의 매국적 행위를 고발합니다’, ‘줄릭파마와 한독약품 김영진 사장은 의약품 유통 독점 음모를 포기 하라’와 같이 광고하는 등 (주)한독약품 및 줄릭파마코리아(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비방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 위반	
(주)미디어월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1독점2244)	(주)미디어월은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00. 12. 31. 현재 자회사 중 주권 비상장법인인 부동산씨브컨설팅(주)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5.0%, (주)부동산씨브의 주식 42.3%, (주)디지털닷컴의 주식 21.2%, (주)젬티보이의 주식 36.0%, (주)정엔 어소시에이츠의 주식 34.0%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2000. 12. 31.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요론닷컴의 주식 40만주를 소유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1항 위반	▶(주)미디어월은 2002. 12. 31.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요론닷컴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2001. 12. 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2148)	현대자동차(주)는 2001. 2월~8월 기간중 영업소 등에 설치된 RV종합가격표상에 자기가 판매하는 “테라칸”차량의 기본사양목록을 안내하면서 ‘테라칸’의 2열 등받이시트가 완전히 펼쳐지지 아니함에도 “풀플랫시트(1,2열)”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해피라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2171)	(주)해피라인은 동양매직(주), (주)롯데기공, 대우캐리어(주) 등 6개 업체와 김치냉장고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체들에 자체 개발한 김치냉장고를 공급하면서 2001. 5월~7월중 서울경제신문 등 3개 일간지를 통해 자기가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김치냉장고 유명 6대 브랜드의 절반은 해피라인이 만들었습니다”라고 자기가 판매하는 김치냉장고를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유명 6대 브랜드의 절반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2001. 12. 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12개 폴리에스터원사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1구사2349)	(주)효성, (주)코오롱, (주)고합, (주)삼양사, (주)새한, SK케미칼(주), 동국무역(주), 대한화섬(주), 도레이새한(주), 한국합섬(주), 금강화섬(주), 성안합섬(주)는 코오롱의 파업, 대하합섬(주)의 가동중단 및 자율감산 등으로 폴리원사 수급사정이 악화되자, 2000. 7. 12. 서울 종로구 소재 명가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2000. 7~8월에 걸쳐 원사가격을 파운드(LB)당 5센트(¢) 인상, 거래처와 가격협상시 가격인상이란 표현보다는 적자 보전을 위한 가격환원으로 표현할 것, 대외적으로 거론하기 위한 8월 기준가격 설정” 등의 내용을 합의하는 헌편, 모임에서 제시한 폴리원사 11개 품목 중 비교적 거래가 활발한 2개 제품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거래처별 판매가격 조사결과 2000. 5~6월에 비해 2000. 7~9월에는 2~5¢/LB 인상하여 판매하는 등 폴리에스터원사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폭 및 대외적으로 거론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국내 폴리에스터원사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1호 위반	<p>▶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과징금 납부</p> <p>(주)효성 : 58,600천원 (주)코오롱 : 78,900천원 (주)고합 : 21,200천원 (주)삼양사 : 45,400천원 (주)새한 : 11,900천원 SK케미칼(주) : 15,500천원 동국무역(주) : 51,400천원 대한화섬(주) : 50,400천원 도레이새한(주) : 37,200천원 한국합섬(주) : 71,200천원 금강화섬(주) : 35,400천원 성안합섬(주) : 24,400천원</p>
4개 나일론원사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1구사2348)	(주)효성, (주)코오롱, (주)고합, 태광산업(주)는 2000. 8. 2.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소재 코오롱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각 사는 70SD 제품에 대하여 2000년 9월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부터 파운드(LB)당 1.15\$ 이상 운영(SDY사 기준)도록 하자. 이를 위해 현재 각 사가 \$1.05/LB 공급하는 수요업체에 대해 8월부터 \$1.10/LB으로 판매도록 하자”, “각 사의 산자용 제품은 2000년 9월부터 \$1.10/LB 판매도록 하자”라고 나일론원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나일론원사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p>	

2001. 12.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네츄럴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2066)	(주)네츄럴팜은 2001. 7월 조선일보 등 3개 중앙일간지에 휴대용 방제·방역기를 광고하면서 “초고성능 미립자(HEPA)방식 휴대용 방역/방제기, 경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실제로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광고와 같은 크기인 전면광고를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실시하고, 동 광고 내에 전체 광고면적의 20분의 1 이상 크기의 정정광고 문안이 포함되도록 함
서울특별시치과기공소대표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1단체1558)	서울특별시치과기공소대표자는 거래상대방인 치과의(병)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한 지위에 있어 1999. 1월 이후 치과기공물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여 물가상승율 만큼의 인상방안을 고심해 오던 중, 2001. 4. 8. 시내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종합학술대회 중식시간에 동 빌딩내 별도의 장소인 세미나실에서 서울시내 치과기공소장 구(區)대표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치과기공료 인상방안을 협의하고, 2001. 5. 1.부터 크라운, 인레이, 포셀레인 등 3개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각각 21,000원, 15,500원, 39,500원 이상으로 올려 받고 이를 각 기공소장들이 거래 치과의(병)원장을 직접 방문하여 통보키로 한다고 결의하는 등 개별 치과기공소 대표자가 결정하여야 할 치과기공물 제작수기를 공동으로 결정, 치과기공물제작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전남동부빙과유통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1광사2187)	<p>전남동부빙과유통협의회는 빙과류제조회사들이 비선 조직을 통하여 제품dump판매와 쇼케이스(냉동고) 무상지원의 방법으로 전남동부지역 빙과류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1. 6. 4. 순천시 연향동 소재 두부마을식당 및 민들레커피숍에서 회원전원이 참석한 모임을 갖고, 같은 날 롯데삼강 냉동고 가 발견된 비선 조직에 대하여 제품공급중단 및 냉동고 회수를 롯데삼강에 공문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2001. 6. 30.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01. 7. 1.부터 회원 전원이 롯데삼강의 제품을 매입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동 결의사항을 롯데삼강 광주지점에 공문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고, 비선 조직에서 냉동고가 발견되지 않은 해태제과, 롯데제과, 빙그레 등 3개 빙과류 제조회사들에 대해서도 2001. 6. 4. 유선상으로 비선 조직에 제품공급 및 냉동고지원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였으며, 같은 모임에서 비선 조직에 대하여 제품 및 냉동고 입수경로를 감시하기로 함과 동시에 감시 결과 비선 조직에 대한 제품공급 및 장비임대 제조회사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제조회사에게 비선 조직에 대한 제품 공급 중단 및 임대장비회수를 시일을 정하여 요청하기로 하고, 이를 제조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원사 전체가 해당 제조회사의 제품매입을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001. 6. 4. 동 결의내용을 국내 빙과류 제조 4개사의 광주지점에 공문 및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 전남동부지역 빙과류판매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3호 및 제8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신시가지 공인중개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2001부사1816)	<p>좌동 신시가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000년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인 (주)텐커뮤니티로부터 부동산거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중, 2000년 12월경부터 신시가지 공인중개사회사가 (주)텐커뮤니티에게 동 지역에서 자기의 관리권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2001. 5. 8. 관리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6. 4. (주)텐커뮤니티는 기존의 좌동 신시가지 부동산 중개업자들과의 거래계약을 해제한 후 신시가지 공인중개사회사가 요청하는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만 정보를 제공, 비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거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p>	<p>▶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현대백화점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2001부사2384)	(주)현대백화점은 2001. 9. 21.~9. 23. 기간동안 “현대백화점 부산점 개점6주년 성원감사” 행사를 실시하면서 동기간동안 150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당첨경품권(즉석식 복권형태)을 배부한 후, 매일 150만원 상품권에 당첨된 고객 1명에게 동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부산일보(4회) 및 전단지(30만부)를 통해 광고하는 등의 경품제공행사를 실시, 적법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최고가액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경품류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12. 1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 (2001부사 2008)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는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자기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태권도장 수련생을 승품·승단 심사에 추천하였다는 사유로 협회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 및 자기 “도장관리규정”에 “협회에 가입한 신규도장의 사범에게 시설분과위원과 심판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자격정지 1년의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 도장이전시 기존 도장과 직선 200m이내에는 이전 설립을 금지하거나 도장 양도 후 신규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기 “도장관리규정”에 “태권도장 설립에 대하여 법적 자격요건 외에 3급 이상 심판자격증 소지자, 울산광역시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규정, 협회에 先 등록후 구청에 태권도장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 신규 도장은 기존 도장과 직선 400m 이내에 신규설립을 제한하는 규정, 1인 1개 도장만 협회 가입을 인정하는 규정, 단일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설립할 수 있는 도장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지역 태권도장업시장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호 위반	▶도장관리규정 중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제2항과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제2조제3항, 5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